##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숭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7

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최승재·김용판·김기현

김태흠 • 한무경 • 홍준표

김예지 • 박대수 • 권성동

이주환 · 조명희 · 허은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·홍수·호우·강풍·풍랑·해일· 대설·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 험으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.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, 온실 (비닐하우스, 축사 포함)을 대상으로 정부가 59~92%의 보험료를 지 원하고,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~47.5%임.

그런데,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천 건으로 0.35%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,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

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(안 제2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"소 상공인"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1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 험지역
- 2.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
- 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
- 4. 소상공인의 사업장
- 5.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국가	제23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①
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	
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	
방재(防災) 의식을 북돋우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	
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	
에 풍수해보험을 가입・유지하	
게 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
	서 "소상공인"이라 한다)으로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u>&lt;신 설&gt;</u>	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
	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
	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
	계획을 매년 수립・시행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
	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
	<u>붕괴위험지역</u>
	2.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에

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

- 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5조 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 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
- 4. 소상공인의 사업장
- 5.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